제 97 호

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권선1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**2024년 11월 27일**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최종신고 주소	신고사항
조**	조** 1959-06-28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68번길	재등록
안**	안** 1981-06-10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탄로	재등록
김**	김** 1985-10-25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68번길	재등록
석**	석** 1987-04-25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69번길	재등록
김**	김** 1989-01-12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	재등록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3항).

(담당자 : 문세영 문의전화 : 031-228-6630)

2024년 11월 12일

권선1동장 